

의안 번호	1667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0. 10. 6.(화)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0. 6.(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0. 15(목)

2. 제안설명 요지(복지환경국장 노선숙)

가. 제안이유

-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연속적인 업무 추진 및 관리·운영에 안정을 기하고,
-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 변경: 2년 → 3년(안 제6조제3항)
- 시설 이용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1)
 - 시설 안전 확보 및 전염병 등 질병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 불필요한 규제 정비(안 제8조제3항)
 - 수탁자가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청장에게 기부·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다. 근거법규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보완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염병 및 질병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일부 정비 하였으며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 · 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3.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읍 · 면 · 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4.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 · 조건 ·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9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촉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